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2788 지방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동부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15. 6. 16.
판 결 선 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5. 31.자 취득세 79,812,000원, 농어촌특별세 3,990,600원, 지방교육세 7,981,200원과 ② 2013. 3. 22.자 취득세 19,198,360원, 농어촌특별세 1,371,310원, 지방교육세 1,097,0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28. 설립된 이래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동 192-18에서 합성수지, 화장품용 거울, 카바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3. 17. 주식회사 고도기연과 사이에 ①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297-11 공장용지 1,496㎡, 같은 리 297-13 도로 39㎡, 같은 리 297-18 공장용지 937㎡, 같은 리 297-19 도로 35㎡, ②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297-11, 297-18 지상 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공장 가동, ③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297-11, 297-18 지상 철골조 공장 비동(이하 ②항을 '이 사건 공장 가동'이라고 하고, ③항을 '이 사건 공장 비동'이라고 하며, ① 내지 ③항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98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과세표준을 1,995,3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79,812,000원, 농어촌특별세 3,990,600원, 지방교육세 7,981,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5. 이 사건 공장 비동을 철거하였고,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297-11, 297-18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신축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13. 3. 22. 이 사건 신축공장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과세표준을 685,656,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9,198,360원, 농어촌특별세 1,371,310원, 지방교육세 1,097,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신축공장의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소정의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2. 12. 24.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 12. 31. 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7,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2012.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인 2012. 7. 10.부터 위 부동산에서 생산활동을 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 또는 제8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 가사 원고가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증축공사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 제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인 2012. 6. 28. 주식회사 고도기연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2) 원고는 2012. 9. 15. 주식회사 [redacted]건설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2. 9. 27.부터 2013. 1. 30.까지, 공사대금 572,0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장 가동 3층 356.45㎡를 439.2㎡로 증축하고, 이 사건 신축공장을 신축하였다.

3) 원고는 2012. 9. 13.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가동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0. 17.부터 2013. 1. 30.까지, 공사대금 150,0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3. 1. 30. 이 사건 신축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3. 3. 22. 이 사건 공장 가동 증축에 따른 변경등기와 이 사건 신축공장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5) 원고는 2012. 12. 24.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동 192-18에 소재하던 기존 공장(이하 '안양 공장'이라고 한다)을 폐쇄하고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6) 원고에 대한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전기요금 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용 기간	요금 연월	사용량(kWh)	요금(원)
2012. 6. 18.~2012. 7. 17.	2012년 7월	3,115	1,621.620
2012. 7. 18.~2012. 8. 17.	2012년 8월	2,966	1,880,250
2012. 8. 18.~2012. 9. 17.	2012년 9월	2,952	1,922,920
2012. 9. 18.~2012. 10. 17.	2012년 10월	2,884	1,879,830
2012. 10. 18.~2012. 11. 17.	2012년 11월	32	1,453,890
2012. 11. 18.~2012. 12. 17.	2012년 12월	0	1,451,9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제19호증, 제20호증, 제25호증의 1 내지 5, 제26호증, 제27호증의 1 내지 4,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제79조 제3항, 제8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받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으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것을 취득세 등 감면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또한,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 부동산을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신축공장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같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① 원고가 2012. 7.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생산활동을 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거래명세표(갑 제18호증의 1 내지 10)와 세금계산서(갑 제21호증의 1 내지 5)상의 원고의 주소지는 위 부동산이 아니라 [redacted]공장으로 되어 있고, 차량운행일지(갑 제14호증의 1 내지 20), 출퇴근카드(갑 제15호증의 1 내지 16), 작업일보(갑 제16호증의 1 내지 14)는 원고의 내부문서로서 사후에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가사 위 각 문서의 내용을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문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안양공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금형을 이전하고 한 달에 2~3회가량 직원 2명을 파견하여 몇 시간 기계를 가동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사업의 개시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시험가동 등 준비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가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7. 10.부터 안양공장을 폐쇄한 2012. 12. 24.까지 점진적으로 설비 등을 이전하였다면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생산량이나 전기사용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작업일보나 전기요금고지서상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012년 7월분 전기요금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 가동에 대한 증축공사와 이 사건 신축공장에 대한 신축공사를 마칠 무렵인 2012년 12월분 전기요금보다 다액이다.

④ 원고는 주요 발주처에 대한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redacted]공장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에서도 생산활동을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작업준비도 완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장 가동 증축공사 등으로 어수선한 이 사건 부동산에 한 달에 2~3회가량 소수의 직원을 파견하여 별도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 단서,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부동산을 그 직접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주식회사 지오건설 등과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점, ②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준공기한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소정의 유예기간인 6개월을 도과한 시점으로 약정된 점, ③ 원고도 이 사건 공장 비동 증축공사 등은 원고가 나머지 부분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준공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원고가 [redacted]공장을 폐쇄하여 이전한 점, ④ 원고가 약정일보다 늦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원고의 사업개시 등에 장애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다른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이루어진 철거, 증축공사 등의 진행경과를 볼 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상·법령상의 장애사유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 부동산을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김선아

판사 이광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법인을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 12. 31. 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이전명령·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3.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끝.